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770
----------	-------

발의연월일 : 2026. 10. 2.

발 의 자 : 송옥주 · 임미애 · 이상식
황명선 · 이성윤 · 윤준병
이수진 · 강준현 · 이개호
박지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농업의 복합화 · 규모화 추세에 따라 시 · 군 또는 시 · 도 단위에서 지역농협 등이 공동으로 지역의 농업 · 축산업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경제사업 · 유통 · 가공 · 판매 등의 사업 등을 연계 · 통합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현행법령에는 시 · 군 또는 시 · 도 지역농협연합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경제사업이나 신용사업 등을 추진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농협연합회장을 조합의 조합원이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해서 대표성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지역농협연합회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를 바탕으로 회원조합지원자금 조성·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사업·경제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조합원의 실질적인 이익 증진과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와 함께 농협중앙회, 지역농협, 지역농협연합회의 사업 범위에 농촌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추가해서 해서 조합원의 이익을 드높이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7조 등).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을 “, 제138조의2에 따른 지역농협연합회(”로 한다.

제57조제1항제2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
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농업·농촌 신재생에너지 보
급 확대 및 관련 사업을 위한 지원·지도·투자 및 대행사업

제134조제1항제2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회원이 수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및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대한 조성·지원·지도, 공동사업 및 위탁사업

제138조의2부터 제138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8조의2(지역농협연합회) ① 지역조합은 그 권익 증진을 도모하고
공동사업의 개발을 위하여 3개 이상의 지역조합을 회원으로 하는
시·군별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별 지
역농협연합회(이하 “지역농협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역농협연합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지역조합의
기준과 가입절차 등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③ 지역농협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교육·지원 사업

가. 회원과 그 조합원의 조직 및 경영의 지도

나. 제품 홍보, 기술 보급 및 회원 간의 정보 교환

다. 회원의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농업·축산업 등 관련 정보의 제공

라. 회원과 그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마. 회원과 그 조합원의 사업 및 생활의 개선을 위한 정보망의 구축, 정보화 교육 및 보급 등을 위한 사업

바. 회원과 그 조합원 및 직원에 대한 자금 지원

사. 회원과 그 조합원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아. 회원과 출자법인에 대한 지원 및 지도

2. 경제사업

가. 회원과 그 조합원을 위한 생산·유통조절 및 시장 개척

나. 회원과 출자법인의 경제사업의 조성, 지원 및 지도

다. 산지 유통의 활성화 및 구조개선 사업

라. 농어촌 신재생에너지 개발·지원·컨설팅에 관한 사업

3. 국가나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4. 다른 법령에서 지역농협연합회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농협연합회의 설립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7. 그 밖에 회원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④ 지역농협연합회는 제1항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원을 위한 자금의 알선과 지역농협연합회의 사업을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와 그 자회사 및 농협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금융기관 예치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⑤ 지역농협연합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손실보전자금, 대손보전자금, 조합상호지원자금 및 조합합병지원자금을 조성·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제사업과 관련된 자금의 운용은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수립한 계획에 따른다.

⑥ 지역농협연합회는 제5항에 따른 조합상호지원자금과 그 밖에 이자지원 등의 형태로 회원을 지원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회원조합지원자금 조성·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38조의3(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① 지역농협연합회장은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 직접 선출한다.

② 회원조합장인 지역농협연합회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선출된 지역농협 및 지역축협과 품목조합의 조합장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추천절차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지역농협연합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④ 회원조합장인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그 밖의 임원(감사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회원조합장이 제126조제2항에 따른 상임인 임원으로 선출되면 취임 전에 그 직(職)을 사임하여야 한다.

⑥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지역농협연합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⑦ 누구든지 지역농협연합회장 외의 임원 선거에 대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⑧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지역농협연합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제138조의4(준용규정) ① 지역농협연합회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19조제2항·제3항·제5항,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3,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까지, 제29조부터 제49조까지, 제49조의2, 제50조,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7조제3항

부터 제7항까지, 제57조의2,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제65조의2, 제66조부터 제75조까지, 제75조의2 및 제76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역농협”은 “지역농협연합회”로 보고, 제24조의2제3항 중 “제57조제1항제2호”는 “제138조의2제3항제2호”로, 제28조제5항 중 “제19조제1항”은 “제138조의2제2항”으로, 제30조제1항제1호의2 중 “제57조제1항제2호”는 “제138조의2제3항제2호”로, 제49조제1항제12호 중 “제57조제1항”은 “제138조의2제3항”으로, 제57조제4항 중 “제1항제7호”는 “제138조의2제3항제3호”로, 제5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항”은 “제138조의2제3항”으로, 제57조제5항제2호 중 “제1항제2호”는 “제138조의2제3항제2호”로, 제57조제6항 중 “제1항”은 “제138조의2제3항”으로, 제58조제1항 단서 중 “제57조제1항제2호가목, 제3호가목, 제7호 및 제10호”는 “제138조의2제3항제2호가목, 제6호 및 제7호”로, 제67조제3항 중 “제57조제1항제1호”는 “제138조의2제3항제1호”으로 본다.

② 지역농협연합회의 우선출자에 관하여는 제14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회”는 “지역농협연합회”로 보고, 제147조제2항 및 제4항 중 “제117조”는 “제138조의3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1조”로 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 조합,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제138조에 따른 품목조합연합회(이하 “조합등”이라 한다) 및 중앙회는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 ----- ----- -----, 제138조의2에 따른 지역농협연합회(----- -----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7조(사업) ① 지역농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제57조(사업) ①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경제사업	2. -----
가. ~ 카. (생 략)	가. ~ 카. (현행과 같음)
<신 설>	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

3. ~ 9. (생략)

② ~ ⑤ (생략)

<신설>

업 및 위탁사업

3. ~ 9.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38조의2(지역농협연합회) ①

지역조합은 그 권익 증진을 도모하고 공동사업의 개발을 위하여 3개 이상의 지역조합을 회원으로 하는 시·군별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별 지역농협연합회(이하 “지역농협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역농협연합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지역조합의 기준과 가입절차 등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③ 지역농협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교육·지원 사업

가. 회원과 그 조합원의 조직 및 경영의 지도

나. 제품 홍보, 기술 보급 및 회원 간의 정보 교환

다. 회원의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농업

· 축산업 등 관련 정보의
제공

라. 회원과 그 조합원의 사업
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
보

마. 회원과 그 조합원의 사업
및 생활의 개선을 위한 정
보망의 구축, 정보화 교육
및 보급 등을 위한 사업

바. 회원과 그 조합원 및 직
원에 대한 자금 지원

사. 회원과 그 조합원의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

아. 회원과 출자법인에 대한
지원 및 지도

2. 경제사업

가. 회원과 그 조합원을 위한
생산·유통조절 및 시장
개척

나. 회원과 출자법인의 경제
사업의 조성, 지원 및 지
도

다. 산지 유통의 활성화 및
구조개선 사업

라. 농어촌 신재생에너지 개
발·지원·컨설팅에 관한

사업

3. 국가나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4. 다른 법령에서 지역농협연합회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농협연합회의 설립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7. 그 밖에 회원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④ 지역농협연합회는 제1항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원을 위한 자금의 알선과 지역농협연합회의 사업을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와 그 자회사 및 농협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금융기관 예치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⑤ 지역농협연합회는 제1항에

<신 설>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
업손실보전자금, 대손보전자금,
조합상호지원자금 및 조합합병
지원자금을 조성·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제사업과 관련
된 자금의 운용은 농협경제지
주회사가 수립한 계획에 따른
다.

⑥ 지역농협연합회는 제5항에
따른 조합상호지원자금과 그
밖에 이차지원 등의 형태로 회
원을 지원하는 자금을 대해서
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회원조합지원자금 조성·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38조의3(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① 지역농협연합회장은 회
원인 조합의 조합원이 직접 선
출한다.

② 회원조합장인 지역농협연합
회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절
차에 따라 선출된 지역농협 및
지역축협과 품목조합의 조합장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추천
절차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총

회에서 선출한다.

③ 지역농협연합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④ 회원조합장인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그 밖의 임원(감사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회원조합장이 제126조제2항에 따른 상임인 임원으로 선출되면 취임 전에 그 직(職)을 사임하여야 한다.

⑥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지역농협연합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⑦ 누구든지 지역농협연합회장 외의 임원 선거에 대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⑧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지역농협연합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

<신 설>

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제138조의4(준용규정) ① 지역농협연합회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19조제2항·제3항·제5항,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3,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까지, 제29조부터 제49조까지, 제49조의2, 제50조,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7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57조의2,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제65조의2, 제66조부터 제75조까지, 제75조의2 및 제76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역농협”은 “지역농협연합회”로 보고, 제24조의2제3항 중 “제57조제1항제2호”는 “제138조의2제3항제2호”로, 제28조제5항 중 “제19조제1항”은 “제138조의2제2항”으로, 제30조제1항제1호의2 중 “제57조제1항제2호”는 “제138조의2제3항제2호”

로, 제49조제1항제12호 중 “제57조제1항”은 “제138조의2제3항”으로, 제57조제4항 중 “제1항제7호”는 “제138조의2제3항제3호”로, 제5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항”은 “제138조의2제3항”으로, 제57조제5항제2호 중 “제1항제2호”는 “제138조의2제3항제2호”로, 제57조제6항 중 “제1항”은 “제138조의2제3항”으로, 제58조제1항 단서 중 “제57조제1항제2호가목, 제3호가목, 제7호 및 제10호”는 “제138조의2제3항제2호가목, 제6호 및 제7호”로, 제57조제3항 중 “제57조제1항제1호”는 “제138조의2제3항제1호”으로 본다.

② 지역농협연합회의 우선출자에 관하여는 제14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회”는 “지역농협연합회”로 보고, 제147조제2항 및 제4항 중 “제117조”는 “제138조의3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1조”로 본다.